

학교법인삼일학원

2022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15인	2인
재적임원	10인	2인

1. 회의일시 : 2022년 05월 26일(목) 17 : 00 (서면통보일 : 2022년 05월 18일)

2. 장 소 : 협성대학교 본관 3층 이사회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임원<가다다순>

-이사(10인): 유철환(이사장), 박진구, 손금주, 양명환, 양상준, 이종천, 이성택
이흥림, 이 철, 조기형

-감사(1인): 김규세

○ 불참임원

-감사(1인): 마상혁

○ 교직원 배석 : 법인과장(염윤옥)

4. 안 건

□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제 2호 의안】 2021회계연도 협성대학교 학교비회계 자금계산(안) 심의

【제 3호 의안】 2021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계산(안) 심의

【제 4호 의안】 임원 해임(안) 심의(당연퇴임)

【제 5호 의안】 총장 직무대리 선임(안) 심의

【제 6호 의안】 교원 임용(안) 심의

【제 7호 의안】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심의

【제 8호 의안】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안) 심의

【제 9호 의안】 SK청솔노인복지관 부설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요양 폐업(안) 심의

간서명	이성택	손금주	이/종천
-----	-----	-----	------

기타협의사항 및 폐회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 장(이사장) : 사무국에서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과 장 : 재적이사 10분 전원 참석, 재적감사 2분중 김규세 감사님 참석하여 정관 제 32조에 의거 개회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가 충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 장(이사장) : 지금부터 제4차 이사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양명환 감독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명환 감독 이사회를 위해 축복기도하다)

【보고사항】

▶ 전 회의록 보고

유철환 이사장이 전 회의록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 간서명 임원 호선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회 참석 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3인 이성택 이사, 이흥림 이사, 손금주 이사를 대표 위원으로 호선하다.

▶ 감사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

첨부된 외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마상혁 감사(공인회계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김규세 감사로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결산 감사 의견은 학교회계에 대하여 자금운영과 자금수지내용을 도교육청 예·결산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되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협성대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일반회계는 회계법인“정윤”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라 교비회계 및 법인일반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 재무제표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다.

간서명	이성택	손금주	이흥림
-----	-----	-----	-----

▶ 심의 의결 사항

【 제 1 호 : 중·고등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회계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 지고 관할청의 관리 지도를 받기 때문에 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이종천 :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 조가형 : 재청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전원 원안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 모두 동의 없으므로 본 안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 안은 원안 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구분	기관명	세입(원)	세출(원)	잔액(원)
학교 회계	삼일중학교	5,376,124,98	5,333,517,633	42,606,465
	삼일상고	13,094,890,492	13,023,910,110	70,980,382
	삼일공고	18,080,897,686	17,778,147,006	302,750,680

【 제 2 호 : 2021회계연도 협성대학교 학교비회계 자금계산(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2호안 ‘협성대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비회계 결산 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과 장 : 협성대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비회계 총 수입은 등록금회계 323억, 비등록금회계 150억, 내부거래 5억 으로 총 468억 7천 만원입니다. 지출은 등록금회계 318억, 비등록금회계 147억, 내부거래 5억 으로 총 지출 461억 으로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7억 7천 만원입니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이 4억 2천 8백만원이며, 기타이월이 3억 4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첨부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에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금 지급이 다음해로 이월된 금액으로 22회계연도 적정 계정과목에 편성되어 집행 될 예정입니다.

간서명	이성택	조가형	이종천
-----	-----	-----	-----

기타이월은 등록금회계 1억 8천 8백만원, 비등록금회계 1억 5천 3백으로 2022회계연도 기자재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관리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 이종천 : 감사보고서 의견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졌으므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 이 철 : 재청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전원 원안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 모두 이의 없으므로 본 안 협성대학교 2021회계연도 학교비회계 자금계산서(안)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구분	등록금회계(A)	비등록금회계(B)	내부거래	교비회계(A+B)
수입	32,335,194,057원	15,057,449,641원	520,000,000원	46,872,643,698원
지출	31,849,809,398원	14,772,712,615원	520,000,000원	46,102,522,013원
잔액	485,384,659원	284,737,026원		770,121,685원

【 제 3 호 :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계산(안) 심의 】

의 장(이사장): 제 3호안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결산 안' 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과 장 : 법인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첨부된 유인물에 의해 법인 일반회계 결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다.

이 사 조기형 : 법인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 확보를 위해 재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 이종천 : 재청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전원 원안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모두 이의 없으므로 본 안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계산서(안)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구분	세입(원)	세출(원)	잔액(원)
법인일반회계	314,294,802	282,567,958	31,726,844

간서명	이성락	손흥우	이종천
-----	-----	-----	-----

[이종천 이사께서 감독이사(교회)께 법인 지정기부금(법인운영비) 지원 요청 공문을 요청하다.]

【 제 4 호 : 임원 해임(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4호안 '임원 해임 안' 발의. 2022.05.06. 을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사무국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과 장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호, 제22조의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의해 임원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 됨을 설명하고, 교육부에 임원 결격사유 발생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하다.

이 사 박진구 :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 조기형 : 재청합니다.(다른 이사님들 전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모두 이의 없으므로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2조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에 따라 이사 당연 퇴임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제 5 호 : 총장 직무대리 선임(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5호안 '총장 직무대리 선임 안' 발의

이 사 이종천 : 정관 시행세칙에 총장이 해임되면 보직자들은 자동 해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과 장 : 정관 제90조 4항 “교학부총장은 교원 중에 책임자로 보하고 학사 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시행세칙에 보직자 임기는 총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잔여 임기에 관계 없이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에 총장이 결위 되었을 때에는 교학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간서명	이성락	손종규	이종천
-----	-----	-----	-----

【 비 공 개 】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함

간서명

이성락

최능우

이동하

의 장(이사장) : 김규세 감독님 말씀대로 두분이 천거 됐다고 보고 두분 중 한 분을 결정하지지요. 이사회에서 결의로서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 사 김규세 : 이종천 이사님이 황 숙 교수를 추천하는 동의안을 내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재청은 아무도 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명환 감독님께서 교학부총장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 장(이사장) : 직무대행 선임 안이 올라와 있고 이종천 이사님께서 황 숙 교수를 추천하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이 사 박진구 : 재청합니다.

의 장(이사장) : 그럼 무기명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이성택 : 투표를 해서 부결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 양명환 : 부결이 되면 지금 다시 천거해서 될 때까지 해야지 이대로 갈수 없지요.

의 장(이사장) : 선임 안이 부결이 되면 임시 지위에 있는 민사 법리에 따라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사 손금주 : 지금 현재 정관에 따라 부총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대행을 새로 선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현 위치되는 것이므로 교학 부총장의 지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 이 철 : 맞습니다. 이 안을 올렸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현재 둘을 놓고 투표하는건 아니지만 기본 안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안이 있고 새로 나온 안이 있으니 가부를 물으면 남는 안이 있으면 종결짓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만장일치 되기는 어려우니 종결짓는 것이 좋습니다.

의 장(이사장) : 감독회장님 말씀은 표결해서 종결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것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 숙 교수님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 로 표기 하겠습니다. 개표위원으로 김규세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하다]

의 장(이사장) : 투표결과 5:5 로 부결 되었습니다. 손금주 이사님 의견에 따라 현재 정관에 의해 부총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교학 부총장의 지위에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 사 양명환 : 부결이 되었으니 총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의 장(이사장) : 기타안건에서 총장 선출 준비위원회구성에 대해 논의 하겠습니다.

간서명	이성택	손금주	이종환
-----	-----	-----	-----

【 제 6 호 : 교원 임용(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6호안 '교원 임용 안' 발의.

사무국 과 장 : 교원 휴.복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정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삼일중학교 미술과목 김규아 교사는 질병휴직, 삼일상고 상업정보 과목 이배종 교사는 질병 휴직 연장으로 지난번 이사회에서 누락되어 이번 이사회에서 추인하고자 올렸습니다. 복직은 2명으로 삼일상고 역사과목 김서희 교사,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황성은 교수입니다.

이 사 이흥림 : 동의합니다.

이 사 이성택 : 재청합니다..

의 장(이사장): 모두 이의 없으므로 교원 임용 안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 휴직

- 삼일중학교 교사 김 아 (2022.5.01.~2022.09.30.)
-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이 종 (2022.03.01.~2022.08.31.)

□ 복직

-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김 희 (2022.05.30. 복직)
- 협성대학교 조교수 황 은 (2022.07.01. 복직)

【 제 7 호 :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7호안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 안' 대해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기획처장, 이수종 교무처장 규정 개정 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자세히 설명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교원 겸직, 신규임용시기와 재임용시기를 동일하게 적용,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에 대해 설명하다.

간서명	이성택	손흥주	이/승하
-----	-----	-----	------

이사장 유철환 : 기획처장과 교무처장께서 간략하게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질문하다.]

이 사 손금주 : 산학·협력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칭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점을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니 큰 문제가 없다면 점을 빼고 산학협력으로 가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 사 김규세 : 교원의 임용시기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교내 교수들끼리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학기 중간에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 양상준 : 손금주 이사님 의견에 따라 점을 빼고 산학협력으로 하고, 교원의 임용 시기는 현행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 이흥림 : 재청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전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 안은 양상준 이사 동의, 이흥림 이사 재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①협성대학교 학칙 개정 : 산학협력단 명칭 변경 → '산학협력'

②교원인사규정 개정 : 원안가결

③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 제15조[임용시기] → 현행유지

④교원업적평가 개정 : 원안가결

〈첨부 1〉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개정(안)

【 제 8 호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8호 의안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안' 발의.

사무국 과 장 :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및 직원, 협성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위원 수 7인에서 신법에 따라 위원 수를 11인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위원중 법인이사 3분과 외부위원 1분은 그대로 구성하고, 사립학교법 제62조 ④항 4호「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외부위원

간서명	이성락	손금주	이흥림
-----	-----	-----	-----

에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학교측 교원과 직원, 외부위원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이 사 이종천 : 직원 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단일화 하면 안됩니까?

의 장(이사장) : 직원 징계위원회에는 일반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 과 장 : 교원과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 이종천 :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 박총장 건과 연관이 된 이 ; 이 : 두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 이성택 : 이사장님께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손금주 : 동의합니다.

이 사 이흥림 : 재청합니다.(다른 이사님들 전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안' 은 손금주 이사 동의, 이흥림 이사 재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각 학교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학교별 교원.직원징계위원구성		
학교명	교원	직원
삼일중학교	교 원 : 외부위원 :	직 원 : 외부위원 :
삼일상고	교 원 : 외부위원 :	
삼일공고	교 원 : 외부위원 :	
협성대학교		직 원 : 외부위원 :

※ 중·고등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

【 제 9 호 : SK청솔노인복지관 부설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요양 폐업(안) 심의(안) 심의 】

의 장(이사장) : 제 9호 의안 'SK청솔노인복지관 부설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요양 폐업 안'입니다. 사무국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성택	손금주	이종천
-----	-----	-----	-----

사무국 과 장 : SK청솔노인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요양 폐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규모 제한에 따른 수익발생 저조 등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신청하게 되었고 폐업 신고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 이 철 :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 사 이성택 : 재청합니다.(다른 이사님들 전원 동의하다.)

의 장(이사장) : 모두 동의 없으므로 'SK청솔노인복지관 부설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요양 폐업 안' 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기 타 사 항 】

□ 제10대 신임 총장 선임에 관한 건

의 장(이사장)은 협성대학교 총장 선출이 시급하므로 총장 선임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구성하되, 중립적 위치에서 김규세 감사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동문이사 2명, 상동이사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니 이성택 이사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동의, 이흥림 이사 재청하다. [참석이사 찬성하다.]

▶ 폐 회 선 언

(폐회를 선포【19:30】하고 위 의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22년 05월 26일 (목요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유 철 환 (유철환)

(가나다순) 이 사 손 금 주 (손금주)

// 양 명 환 (양명환)

간서명	이성택	손금주	이흥림
-----	-----	-----	-----

// 양 상 준 (양상준)

// 이 성 택 (이성택)

// 이 종 천 (이종천)

// 이 흥 림 (이흥림)

// 이 철 (이철)

// 조 기 형 (조기형)

// 박 진 구 (박진구)

감 사 김 규 세 (김규세)

간서명	이성택	조기형	이흥림
-----	-----	-----	-----